##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22

발의연월일: 2021. 7. 29.

발 의 자:김성원·배현진·이 용

최형두ㆍ윤상현ㆍ이종배

정운천 · 권성동 · 최춘식

박덕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 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 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 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지난 6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전국 144만 6,000명)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로 그 실적이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또한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 상하기 위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알려져 보험가입 촉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제7조제1항및 제23조).

법률 제 호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제7조제1항 본문 중 "일부"를 "일부 또는 전부"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주택 등 재산의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 험지역
-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 4. 그 밖에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법률 제18210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하게 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주택 등 재산의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 험지역
  -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 4. 그 밖에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제4조(보험목적물)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	
(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	
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	
로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u>농수산물</u>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	
는 보험료의 <u>일부</u> 를 지원할 수	<u>일부 또는 전부</u>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	
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	
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생	
세20조(모임/[百기 국신 중) (경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신 설>

법률 제18210호 풍수해보험법 법률 제18210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 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 내의 주택 등 재산 의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을 가 입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 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 4. 그 밖에 풍수해로 인한 재난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 정되는 지역

일부개정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 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 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유 기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유 지하게 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ㅣ 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 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 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 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 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 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

- 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게 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 - 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_ 제6 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 내의 주택 등 재산 의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을 가 입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추진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 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4. 그 밖에 풍수해로 인한 재난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 정되는 지역